탄 원 서

수 신	대법원 해당 형사재판부 귀중
피고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원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2026. 10. 28. 선고)
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배당 후 사건번호 기재): _____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저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지막까지 법률과 기록에 충실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가 국가의 사법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무거운 형이 선고된 한 사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실제로 인정된 행위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인정된 행위에는 어떤 법률적 책임이 따르는지 끝까지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직접 본 사람도, 피고인의 모든 생각과 선택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제 추측으로 뒤집거나 피고인에게 없었던 선행과 반성을 만들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부탁은 하나입니다. 사회적 평가의 크기와는 별개로 김성훈이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형사책임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판단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확함 속에서만 엄정함도, 공정함도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1. 상고심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드리는 부탁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징역 5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이른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상고는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처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사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상고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적법하게 제시하는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고이유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특정한 법령위반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인 만큼 법률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빠짐없이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 항소심이 일부 사실인정을 달리 본 대목의 의미

항소심 선고에 관한 공개 보도에서는 군·경 병력의 추가 동원과 차벽 설치 제안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중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유지했고, 전체적인 책임과 형량도 달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일부 사실인정이 바로잡혔다고 하여 전체 판결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가 피고인의 제안·지시로 인정되었는지, 그 밖의 행위는 어떤 증거와 이유로 피고인에게 연결되었는지, 서로 다른 행위들이 법률상 하나의 책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 법률상 문제가 적법한 상고이유로 제기된다면,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과 법적 결론 사이의 관계를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인정된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은 행위를 무심코 한 사람의 책임 안에 포함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별은 피고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3. 조직적 저지 행위에 관한 개인의 역할과 범위

항소심은 김 전 차장이 조직적인 영장 집행 저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박종준 전 처장 사임 뒤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관련 행위가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외면하고 단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권을 행사한 지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수 인원이 관여한 사건에서 각자의 판단과 행위를 구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피고인이 직접 내렸는지,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어떠한 범위에서 전달하거나 집행했는지, 현장 대응의 어느 단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과 책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상고심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의 관계에 관한 적법한 법리적 쟁점에 한정하여 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실제로 결정하고 지시한 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조직 전체의 대응을 피고인 한 사람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법률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두 원칙이 함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4. 비화전화 관련 혐의와 이미 제시된 대법원 판단

김 전 차장에게는 군 사령관들이 사용한 경호처 비화전화 통화기록의 삭제 또는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시한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공개된 항소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24년 12월 7일 당시 지원본부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영장 집행 저지에 관한 판단과는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선고한 2026도6500 판결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별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상 해당 범죄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통화기록이 실제로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판결의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정된 판단의 의미를 존중합니다.

다만 관련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개별 행위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모두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기되었다면, 경호처 내 직무권한의 범위, 지시의 내용과 목적, 당시에 인식한 사정, 원심이 인정한 증거와 해당 법률 구성요건의 연결이 법리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사건 자체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과 충돌하는 주장을 억지로 펼치기보다, 그 법리 안에서 한 사람의 책임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5. 관련 사건의 판단을 존중하되 이 사건 당사자를 구별해 주십시오

대법원 2026도6500 판결은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그 거부의 법적 한계에 관한 판단도 제시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경호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판단된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는 탄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법리가 엄격하게 정립되어 있을수록 그 법리를 각 사람의 구체적 행위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정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로 언급되었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최종 판단은 그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상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은 기존 대법원 판단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6. 잘못의 책임과 한 사람의 남은 삶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항소심에서 김 전 차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고도 징역 5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성했다는 한마디만으로 이미 내려진 형을 상고심에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읽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기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에게 형벌이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맞게 받아야 하겠지만, 그 사람의 과거 어느 한 시점만이 남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위반이 인정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절차가 열리는 경우라면, 그때에는 실제로 확인되는 반성, 책임의 수용, 향후 변화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개인별 사정으로 충실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뜻도, 상고심의 권한을 넘어 선처해 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법이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과 사람의 삶을 끝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마음은 제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할 때에만 그 형벌의 무게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7. 제 탄원의 이유와 재판부께 드리는 마지막 청

제가 이 사건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논쟁의 어느 쪽이 이기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크고 복잡한 사건의 책임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구체적인 형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한 장이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와 법원의 소송기록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덧붙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판단을 끝까지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없는 책임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책임을 가볍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판단입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상고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심리해 주시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확인된다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이 글로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의 문 앞에서, 김성훈 전 차장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와 법률상 책임이 정확하게 가려지는 일만은 끝까지 소홀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밝힌 원칙도 존중되고, 한 사람의 미래를 판단하는 신중함도 함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적법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해 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경우라면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올바르게 주어지기를 간청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탄원입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대법원 해당 형사재판부 귀중